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98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이탄희·고용진·김성주

김용민 · 박광온 · 박범계

박주민 · 송기헌 · 신현영

양경숙 · 위성곤 · 이성만

이용빈 · 이재정 · 인재근

임호선 • 전용기 • 최강욱

최인호 · 최혜영 · 홍익표

의원(21인)

제안이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이에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는 확정 판결문 중 비실명화된 일부 판결문만 공개하고, 공개비율도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함. 다음으로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리예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PC도 4대 뿐이며 사진촬영과 출력이 엄격히 금지되고 열람시간도 제한되어 있음. 한편 법원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를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미확정 판결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열람 가능하고 검색 기간을 1년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판결문 열람을 위해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KICS(킥스)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구해보는 경우가 있어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2018년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민사 및 형사 미확 정 판결서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 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81%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따라서,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각 법원의 판결서를 검색할 수있도록 해야 하며, 전자정부 시대를 고려할 때 무료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한편 법원은 판결서 상의 성명, 연락처, 금융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조차 비실명화해 판결문 내용 이해나 임의어 검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 시 가급적 비실명 처리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 현행법상 보호조치의무 규정을 유지함.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

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 조의2제1항).
- 나.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163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299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의2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를 "판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 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 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 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 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1 제4조 및 이 법 제429 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 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 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 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

부 제한할 수 있다.

개 정 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 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 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 사건심판법 이 적용되는 사건 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 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 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 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 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 <u>야 한다.</u>

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 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 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 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